

2025 회계사 객관식 상법 추록 (1월16일)

● 2025. 1. 31.부터 지점등기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된 문제와 해설의 내용을 모두 변경함.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1쇄	181	문제 143 ④	④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④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쇄	182	문제 143 해설 ④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쇄	184	문제 145 ①	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쇄		문제 145 해설 ①	① 옳은 내용이다. 본점에서 등기할 사항은 항상 지점에서도 등기해야 한다고 정리하면 된다.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① 2025. 1. 31. 상법 개정으로 지점등기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본점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쇄	360	문제 281 해설 ⑤	⑤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것이고 지점에서의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	⑤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것이고 지점에서의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 2025. 1. 31. 상법 개정으로 지점등기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
1쇄	376	문제 295 해설 ⑤	③ 전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쇄		문제 296 해설 ①	③ 전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쇄	380	문제 299 해설 ③	② 전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1쇄	382	문제 300 해설 ⑤	③ 전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쇄,2쇄	387	문제 305 ⑤	⑤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⑤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쇄	388	문제 305 해설 ⑤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1쇄	418	문제 329 해설 ⑤	제528조(합병의 등기) 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8조(합병의 등기) 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쇄,2쇄	469	문제 10 ⑤	⑤ 상인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⑤ 상인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문제 10 해설 ⑤	⑤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⑤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i)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둔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ii) 회사의 경우에는 지점등기가 폐지되었으므로, 그 지배인을 둔 지점 소재지가 아니라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
1쇄	473	문제 14 해설 ②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
1쇄	476	문제 16 해설 ②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
1쇄	495	문제 32 해설 ⑤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1쇄	499	문제 36 ③	③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문제 36 ④	④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의 규정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지배인의 해임을 등기하지 않으면 지배인 아닌 자를 지배인으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36 해설 ③	③ 본점 등기사항은 본지점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제35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③ 2025. 1. 31. 상법 개정으로 지점등기제도가 폐지되었다.
1쇄	500	문제 36 해설 ④	④ 지배인의 선·해임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제38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④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제13조(지배인의 등기) <u>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u>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